

대법원 2018도6730

윤전추 등 국회에서의증언·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보도자료

대법원 공보관실(02-3480-1451)

대법원(주심 대법관 조재연)은 2018. 7. 20. 윤전추 등 7인에 대한 국회에서의증언·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에서 [피고인들 및 검사의 상고를 기각](#)하여, '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'로부터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요구서를 송달받고 불출석한 사건에서 [2016. 12. 14., 2016. 12. 15., 2016. 12. 22. 각 청문회에 불출석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고, 2017. 1. 9. 청문회에 불출석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](#)하였음(대법원 2018. 7. 20. 선고 2018도6730 판결)

1. 사안의 내용

▣ 공소사실의 요지¹⁾

- 피고인들은 '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'로부터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임
- 피고인 윤전추는 2016. 12. 14. 예정된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요구서를 송달받고 불출석함
- 피고인 한일, 박재홍은 2016. 12. 15. 예정된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요구서를 송달받고 불출석함
- 피고인 윤전추는 2016. 12. 22. 예정된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

1) 기사화할 때 필요하다면 비실명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요구서를 송달받고 불출석함

- 피고인 윤전추, 김경숙, 박상진, 추명호, 정매주는 2017. 1. 9. 예정된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석요구서를 송달받고 불출석함

▣ 원심의 판단

- 2016. 12. 14., 2016. 12. 15., 2016. 12. 22. 불출석 부분은 유죄
- 2017. 1. 9. 불출석 부분은 무죄

2. 대법원의 판단

가. 사건의 쟁점

- ▣ 고발장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지
- ▣ 소추요건에 해당하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고발이 적법한지
- ▣ 피고인들이 증인으로 불출석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지
- ▣ 증인 채택을 위한 위원회의 의결을 '위임 의결'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

나. 판결 결과

- ▣ 상고기각 (일부 유죄 확정)

다. 판단 근거

- ▣ 위원회의 고발이 접수된 날부터 2개월 내에 수사를 종결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검사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훈시규정임
- ▣ 증인에 대한 출석요구서에 상세한 신문 요지가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, 신문할 요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의 신문을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므로, 출석요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
- ▣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

- 관계 법률에 의하면, 국회 위원회는 그 의결로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, 위원회가 달리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로 증인의 채택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, 2017. 1. 9. 불출석한 증인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을 위한 적법한 의결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

3. 판결의 의의

-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함
-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대법원의 선례가 없었는데,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재판과 달리 증인 불출석을 형사처벌하는 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에서 위원회가 달리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로 증인의 채택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가 없으므로, 증인 출석 요구를 위한 적법한 의결이 없었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함